부 록

- 1. 2011년 국내 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현황
- 2. 2011년 해외 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현황
- 3.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자)(2000~2010)
- 4.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작품(2000~2011)
- 5. 게임비평상 수상작
- 6. 프로 게임단
- 7. 게임방송
- 8. 전국 PC방 현황
- 9. 게임관련잡지, 웹진
- 10. 주요기관 및 단체
- 1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2011년 국내 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현황

1) G★(지스타)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2011 국제게임전시회
일자	- 2011.10.10~10.13. 4일간(10:00~18:00)
장소	- 부산 벡스코(BEXCO) 전시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구성	- 공식행사 • 개막식, 리셉션 등 - B2C관 • 전시참가기업 부스, e스포츠리그, 게임문화 페스티벌, 보드게임 대회 등 - B2B관 • 수출상담회, B2B 네트워크 파티, ICON 2010, 취업박람회 등
규모	- 26개국 300업체(2010년, 24개국 200개 업체)
품목	- PC/온라인게임, 무선/모바일/PDA게임, 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 게임관련 주변기기,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 -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멀티플랫폼 콘텐츠 -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문 직업 교육 등
성격	- B2C, B2B 통합 전시회, 게임문화축제
웹사이트	- www.gstar.or.kr

2)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KGC, Korea Games Conference)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2011(KGC, Korea Game Conference)
일자	- 2011.11.7~11.11.
장소	-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센타(EXCO)
주최	-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구성	- 컨퍼런스, 부대 전시, KGC Awards
규모	- 2010년 총 13개 트랙, 115개 강연, 6,000명
성격	-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kgconf.com

3) 코리아보드게임콘 (KBC, Korea Boardgame Con)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코리아보드게임콘 (KBC, Korea Boardgame Con)
일자	- 2011.7.20~7.24.
장소	- 서울 코엑스
주최	-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엑스
주관	- (사)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구성	- 총 15개 전시부스, 100여 개 체험테이블
규모	- 15개 업체, 300여 종의 보드게임, 체험인원 약 15,000명 ※ 2010년은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와 동시 개최
성격	- 국내 최대의 보드게임 축제, 가족 놀이문화의 장
웹사이트	- www.boardgame.or.kr

2. 2011년 해외 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현황

1) 게임전시회

(1) E3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일자	− 2011.6.7~6.9.
장소	- 미국 로스엔젤레스 컨벤션 센터(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Concoures Hall)
주관	- ESA(Electronic Software Association)
구성	- 전시회
규모	- 독일의 GC(GamesCom), 일본의 도쿄게임쇼와 함께 세계 3대 게임쇼
품목	- 약 1,000개사 참가, 47,000여 명 참관 - 각종 게임개발사(콘솔중심, PC, 모바일) 및 게임 주변기기 개발사 등
성격	- ESA 회원사들은 대부분이 메이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Nintendo, Sony, Microsoft, Vivendi, Activision, Atari 등) - 2007∼2008년은 ESA회원 대상으로 비즈니스만을 위한 행사로 운영하면서 국제전시회로서 위상이 악화되고 규모가 축소됨. 2009년부터는 예전처럼 전시 및 비즈니스 형태로 복귀하여 2010년에는 최대 게임전시회로서 위상 탈환 (3DS, 키넥트, Move 등 신규 플랫폼 대거 소개) - B2B 전시회
웹사이트	- www.e3expo.com

(2) Fantasy China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Fantasy China(中國國際動漫游戏博覽會)
일자	- 2011.7.7~7.11.
장소	- 상해전람센터
주관	- 상해시문화방송영상관리국, 국가동만유희산업진흥기지
구성	- 전시회, 컨퍼런스
품목	- 카툰, 게임(아케이드 위주), 애니메이션 관련
성격	- 2007년 3회까지는 C&G(Cartoon&Game) Fair, 2008년부터 명칭변경 - 애니메이션, 카툰, 아케이드게임기 전시 및 코스프레, 게임대회 등의 행사로 구성
웹사이트	- www.intl-cg.com

(3) China Joy

	-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China Joy(China Digital Entertainment Expo & Conference)
일자	- 2011.7.28~7.31.
장소	- 상해 국제 엑스포 센터(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주관	- 중국출판공작자협회 게임공작위원회, 상해시신문출판국 - 북경 한위국제전람유한공사
구성	- 전시회, 컨퍼런스(CGDC, CGBC), e스포츠, 코스튬 등
규모	- 30개국 221개사 참가, 170,000명 참관
품목	- 게임기기/주변기기, 온라인콘텐츠 제품, 모바일·PDA·MP3 소프트웨어
성격	- 9회째 개최 - TGS 다음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 - B2C 위주로 온라인게임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 - B2B 비즈니스 협상구역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 - 차이나조이 시리즈 코스튬플레이 등 이벤트 개최 - CGBC, CGDC, CGOC 등 다양한 컨퍼런스 개최 - CGBC(China Game Business Conference): 비즈니스 컨퍼런스로 해외 게임업체들과 중국업체 간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 주선 - CGDC(China Game Developers Conference): 국내외 유명 게임 연구기관과 게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발전의 추세를 분석하는 토론이 진행 - CGOC(China Game Outsourcing Conference):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해외 외주제작의 트랜드를 보여주는 해외코너와 외주제작업체와 개발사와 비즈니스 협상 진행 ※ 블리자드, EA 등 메이저 게임기업 참여
웹사이트	- www.chinajoy.net

(4) GC(GamesCorn)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C(gamescom)
일자	- 2011.8.18~8.21.
장소	- 독일 퀼른
주관	- 퀼른 메세
후원	- German Trade Associat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구성	- 전시회, 컨퍼런스(GDC Europe)
규모	- 40개국 557업체, 275,000명(2010년 33개국, 505업체 참가)
품목	- 엔터테인먼트 게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미디어 출판물, 교육/서비스 등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터액티브 게임 무역 전시 박람회)
성격	- 3회 개최, 유럽 최대 콘솔게임 전시회로 B2C/B2B 규모로서는 세계 최대 전시회 - 구성: 전시회, GDC Europe 컨퍼런스, GamesCom Festival, GamesCom Award, GameNGame GNGWC 대회 - 참가사: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전하고, 엔씨소프트 유럽, 액티비전, 블리자드, 캡콤, 에이도스, EA, 코나미, 스퀘어 에닉스, 테이크-투, THQ, 유비소프트 등 대거 참가
웹사이트	- www.gamescom-cologne.com

(5) TGS(동경게임쇼)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TGS(Tokyo Game Show)
일자	- 2011.9.15~9.18.
장소	- 일본컨벤션센터(Makuhari Messe) Chiba City
주관	- 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CESA), Nikkei Business Publications(공동 주관사)
구성	- 전시회, TGS 포럼
후원	- 경제산업성
규모	- 146업체 참가
품목	-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플랫폼
성격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솔 중심의 게임쇼 - B2B(2일), B2C(2일) 동시 진행 -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사뿐만 아니라 게임기 주변기기, 게임 개발 툴 관련사, 게임 배급 및 유통사, 게임 하드웨어 개발사 등 게임과 관련한 모든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전시회 - 미발매 작품을 중심으로 한 최신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가 출전하였으며, 새로운 게임기 및 차세대 휴대폰 등장 등 미래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전망할 수 있는 전시회
웹사이트	- tgs.cesa.or.jp

(6) Dubai World Game Expo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두바이 세계게임엑스포(Dubai World Game Expo)
일자	- 2011.11.30~12.3.
장소	-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
주관	- INDEX Conference & Exhibitions Organization Est
후원	- 에미레이트과학클럽, 에미레이트문화과학협회, 두바이컨벤션뷰로
구성	- 전시회, 워크숍
품목	-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게임관련 하드웨어/차세대플랫폼
성격	- 중동 및 걸프지역 게임 전시회 (4회째 개최) - 이랍에미리트 정부 공식 후원 전시회 - B2B 중심의 중동 최고 규모의 인터액티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 중동 및 걸프지역,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바이어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 가능 중동 및 걸프지역 내 기업이미지 제고 - Dubai World Game Summit, Dubai World Game Championship 병행
웹사이트	- www.gameexpo.ae

2) 아케이드게임 관련 전시회

(1) AOU (일본)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AOU 2011 어뮤즈먼트 엑스포
일자	- 2011.2.18∼19.
장소	- 일본 마쿠하리메세
주최	- (사)일본어뮤즈먼트영업자협회
테마	- 어뮤즈먼트 문화 발전 지향
품목	- 이케이드게임, 코인오락기, Ride 시설물, 시뮬레이션, 겜블게임, 카드시스템 게임, UFO 게임 등 세계 어뮤즈먼트업계를 선도하는 기기, 부품, 경품 등 전시
성격	- 아케이드게임기 관련 전문 전시회
웹사이트	- www.aou.or.jp

(2) GTI Asia Taipei Expo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TI Asia Taipei Expo
일자	- 2011.5.5~5.7.(18호)
장소	- 대만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주관	- GTI EXPO 조직위원회(GTI Magazine, TDEA and TAMA)
규모	- 40개국 650업체
품목	- 게임기기 및 주변기기, 경품용 게임기, 경품 배출기, 인식기, 아케이드게임기 부품
웹사이트	- www.gtiexpo.com.tw

(3) GTI Asia China Expo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TI Asia China Expo
일자	- 2011.8.25~8.28.(3회)
장소	- 폴리 세계 무역 엑스포 센터(Poly World Trade Expo Center)
주관	- Haw Ji Co.
품목	- 게임기기 및 주변기기, 경품용게임기, 경품 배출기, 인식기, 아케이드게임기 부품 등
웹사이트	- www.gtiexpo.com.tw

(4) 어뮤즈먼트 머신쇼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어뮤즈먼트 머신쇼 2011(Amusement Machine Show)
일자	- 2011.9.15~9.17.(49 <u>ā</u> l)
장소	- 일본 마쿠하리메세
주최	- 사단법인 일본어뮤즈먼트머신공업협회(JAMMA), 전일본유원시설협회(JAPEA)
후원	-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경제신문사
구성	- 전시회 : 총 5관(arcade, family, prize, related, publication zone) - 세미나
품목	- 아케이드게임기, 메달게임기, 프라이즈게임 및 경품소프트, 어뮤즈먼트 자판기, 승합물 및 유원시설 기구 등 전시
성격	- 아케이드게임기 관련 전문 전시회
웹사이트	- www.am-show.jp

(5) ENADA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ENADA(International Amusement & Gaming Show)
일자	- 2011.10.12~10.14.(39회 개최)
장소	- 이탈리아 로마 엑스포센터
주관	- SAPAR(이탈리아 아케이드게임협회) - AAMS(이탈리아 재경부 산하 게임관련 산업 담당기관) - EUROMAT(유럽 경품용 게임협회) - RiminiFiera(행사조직위원회)
구성	- 전시회
규모	- 2010년 규모 30,000㎡, 200개사 참가, 14,406명 참관
품목	- 게임기기 및 주변기기, 경품용 게임기, 당구장용 게임기, 경품 배출기, 인식기, 핀볼게임, 쥬크박스, 경품용 게임기 및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등 전시
웹사이트	- www.enada.it

(6) IAAPA Attractions Expo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IAAPA Attractions Expo 2011
일자	- 2011.11.14~11.18.(conference) - 2011.11.15~11.18.(trade show)
장소	- 미국 올랜도 오렌지카운티 컨벤션 센터
주최	- IAAP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구성	- 전시회, 시상식, 컨퍼런스
규모	- 96개국, 24,000명 참관
품목	-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테마파크용 게임기, 코인오락기, 테마파크 설비, Ride 시설물, 시뮬레이션 등 세계 최고/ 최대의 위락기기 전시회
웹사이트	- www.iaapa.org

(7) IAAPA Attraction Asian Expo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IAAPA Attraction Asian Expo 2011
일자	− 2011.6.22~6.24.
장소	- 리조트 월드 컨벤션 센터(싱가폴 센토사)
주최	- IAAP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구성	- 전시회, 컨퍼런스
규모	- 40개국, 바이어 3,000명 참관
품목	- 이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테마파크용 게임기, 코인오락기, 테마파크 설비, Ride 시설물, 시뮬레이션 등 세계 최고/ 최대의 위락기기 전시회 등
웹사이트	- www.iaapa.org

3) 테이블 보드게임 관련 전시회

(1) Spielwarenmesse International Toy Fair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Spielwarenmesse Internaitonal Toy Fair Nurenberg
일자	- 2011.2.3~2.8.
장소	- 독일 뉘른베르크
주관	- Spiewarenmesse
규모	- 63개국 2,683개사 참가(7만 개 상품), 114개 국 79,243명 참관객
품목	- 전동완구, 목재완구, 보드게임, 봉재완구 등
성격	- 세계 최대의 완구 및 레저용품 박람회 - 매년 약 7만개 이상의 신상품이 소개되는 세계 완구산업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박람회 - B2B 박람회
웹사이트	- www.toyfair.de

(2) World Boardgaming Championship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World Boardgaming Championship(WBC)
일자	- 2011.8.1∼8.7.
장소	- 미국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주관	- Boardgame Players Association
구성	- 약 70여 종목 보드게임 대회, 약 20여 개 세미나, 보드게임 경매
성격	- 미국 최대 규모의 보드게임 대회 - 인터넷을 통해 팬 투표로 게임 종목을 선정 - 팀 토너먼트 대회
웹사이트	- www.boardgamers.org

(3) GENCON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ENCON
일자	- 2011.8.4∼8.7.
장소	-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컨벤션 센터
주관	- GENCON LLC
구성	- 신작 게임, 가족 게임, 아트쇼, 작가의 거리 등으로 구성
규모	- 30,000명 참관객
품목	- 보드게임, TCG, TRPG, 전자게임
성격	- 1968년에 시작된 북미지역 최대 보드게임 관련 박람회 - 프랑스, 영국, 호주에서도 GENCON 개최
웹사이트	- www.gencon.com

(4) SPIEL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SPIEL ESSEN
일자	- 2011.10.20~10.23.
장소	- 독일 에센
주관	- Friedhelm Merz Verlag GmbH & Co.
구성	- 보드게임 및 만화 9관
규모	- 2010년 786개사 참가업체, 154,000명 참관객
품목	- 보드게임, 만화
성격	- 세계 최대 보드게임 박람회, B2C, B2B 박람회
웹사이트	- www.internationalespieltage.de

(5) CHITAG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Chicago International Toy & Game Fair
일자	- 2011.11.19~11.20.
장소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관	- Chicago Toy & Game group
구성	- 보드게임 및 완구를 전시, 체험하는 국제 박람회
규모	- 80개 업체
품목	- 보드게임, 컴퓨터 게임, 완구
성격	- 최신 보드게임과 완구를 체험하는 박람회 - 에듀테인먼트 컨퍼런스 병행
웹사이트	- www.chitag.com

4) 국제컨퍼런스

(1) GDC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일자	- 2011.2.28~3.4.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
주관	- CMP Media LLC
규모	- 컨퍼런스 18,000명 이상 참가, GDC EXPO 250개사 참가
구성	- 400개 이상의 강연 및 패널 등의 컨퍼런스 - 게임산업 관련 직업 및 전시부스를 위한 GDC EXPO 개최 - 각종 전시회 기간 중 개최하는 기업 혹은 GDC 후원행사
성격	- 세계 최대 게임 컨퍼런스 - GDC Expo, IGF Mobile Awards, Career Pavilion, 11th Annual Independent Games Festival & Awards Ceremony, Game Connection, F2P Forum 등 다양한 부대행사 구성 - GDC 이벤트 GDC Europe 2011: 8.15∼17. GDC Online 2010: 10.10∼13. GDC China 2010: 12.11∼14.
웹사이트	- www.gdcconf.com

(2) LOGIN Conference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ION Game Conference
일자	- 2011.5.16~5.18.
장소	- 벨뷰, 워싱턴
구성	- 컨퍼런스
성격	- 온라인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춘 국제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loginconference.com

(3) CEDEC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CEDEC(Cesa Developers Conference)
일자	- 2011.9.6~9.8.
장소	- 일본 요코하마
주관	- (사)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구성	- 컨퍼런스, 부대전시
성격	- 개발자 및 학생을 위한 게임 전문 컨퍼런스
웹사이트	- cedec.cesa.or.jp

3.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자)(2000~2010)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
본상	대상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최우수상		슬라이스 잇!	(주)컴투스
		PC/비디오게임	메이플스토리 DS	(주)넥슨모바일
		온라인게임	아르고	(주)지모레스트
	우수상	아케이드게임	쉐이크 쉐이크	매직빈
		모바일게임	스티커 슈팅 스타	블루페퍼(주)
		오픈마켓 아마추어게임	NEONSQUARE	G-PIK(Game-Project in KAH)
		게임기획/시나리오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부문상	기술창작상	게임그래픽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구正성	기탈성색성	게임캐릭터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게임사운드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공로상	산업진흥부문	김민규	아주대 교수
		건전게임문화부문	씨제이 인터넷(주)	-
	인기게임상	PC/비디오/기능성게임	메이플 스토리 DS	(주)넥슨모바일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영웅전	(주)넥슨
	L/1/1100	아케이드게임	쉐이크 쉐이크	매직빈
		모바일게임	2011 프로야구	(주)게임빌
기타 부문	우수개발자상		송재경	(주)엑스엘게임즈 대표이사
	기능성 게임성	ţ	아라누리	삼지게임즈(주)
	우수업소상		대한민국 No.1 인터넷 PC방	안종인
			오픈업 인터넷 PC방	신윤철
	게임비즈니스	혁신상	전광수	(주)엔씨소프트 게임서비스운영실장
	사회공헌우수	기업상	(주)엠게임	-
	게임커뮤니티	상	이츠대전 : 서든어택	-
	게임학술상		오규환	아주대 교수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C9	NHN게임스
본상	최우수상		에이카 온라인	조이임펙트
		PC/비디오게임	마그나카르타2	소프트맥스
	044	온라인게임	허스키 익스프레스	넥슨
	우수상	아케이드게임	발칸엠	라센
		모바일게임	메이플 스토리 해적편	넥슨모바일
		게임기획/시나리오	에이카 온라인	조이임펙트
부문상	기술창작상	게임그래픽	C9	NHN게임스
740	712070	게임캐릭터	C9	NHN게임스
		게임사운드	C9	NHN게임스
	공로상	산업진흥부문	김규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건전게임문화부문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 前회장
	인기게임상	PC/비디오/기능성게임	라그나로크	그라비티
		온라인게임	에이카 온라인	조이임펙트
	L/1/1100	아케이드게임	디제이 맥스 테크니카	펜타비전
		모바일게임	2010 프로야구	게임빌
기타 부문	우수개발자상		김대일	NHN게임스 실장
	기능성 게임성	ļ.	마법천자문 DS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오픈마켓 아미	· 추어상	해당작 없음	
	우수업소상		명랑 게임장, GS랜드 게임장, 블루투스 PC클럽	
	사회공헌우수	기업상	씨제이 인터넷	
	게임비즈니스	혁신상	서호성	네오위즈게임즈 팀장
	게임커뮤니티	 상	'새로운 세계, (29 네이버 카페'
	게임학술상		위정현	(사)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
본상	대상		아이온:영원의 탑	(주)엔씨소프트
	최우수상		아틀란티카	(주)엔도어즈
		PC/비디오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서클 오브 둠	(주)블루사이드
	0.4.1	온라인게임	프리우스 온라인, 십이지천2	씨제이아이지(주), (주)기가스소프트
	우수상	아케이드게임	슈퍼 액션 히어로2	(주)컴투스
		모바일게임	헥서스	(주)조엔
		게임기획/시나리오	제노니아	(주)게임빌
부문상	기술창작상	게임그래픽	헉슬리	(주)웹젠
720	/12070	게임캐릭터	슈퍼 액션 히어로2	(주)컴투스
		게임사운드	헉슬리	(주)웹젠
	공로상	산업진흥부문	백칠현	(주)윈디소프트 대표이사
		건전게임문화부문	씨제이 인터넷	-
		PC/비디오/기능성게임	기어스 오브 워2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인기게임상	온라인게임	슬러거	(주)와이즈캣
	2/1/1100	아케이드게임	-	-
기타 부문		모바일게임	2009 프로야구	(주)게임빌
	우수개발자상		김태곤	(주)엔도어즈 이사
	아마추어상(인	!디게임, 게임아이디어)	조영원, 박 웅	-
			게임월드	
	040111		월드21 게임랜드	
	우수업소상		매니아	PC클럽
			탑	PC존
	사회공헌우수	기업상	(주)예당	: 온라인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	
본상	대상		아바	(주)레드덕	
	최우수상		창천 온라인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PC/비디오게임	디제이 맥스 포터블2	(주)펜타비전	
	044	온라인게임	쿵야 어드벤처, 던전 앤 파이터-Teen	씨제이아이지(주), (주)네오플	
	우수상	아케이드게임	팡팡 파라다이스	(주)인터파크게임즈	
		모바일게임	놈3	(주)게임빌	
		게임기획/시나리오	쿵야 어드벤쳐	씨제이아이지(주)	
부문상	기술창작상	게임그래픽	아바	(주)레드덕	
TEO	712070	게임캐릭터	아바	(주)레드덕	
		게임사운드	쿵야 어드벤쳐	씨제이아이지(주)	
	공로상	산업진흥부문	이재철	(주)웹젠	
		건전게임문화부문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PC/비디오/기능성게임	헤일로3	마이크로소프트	
	인기게임상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Teen	(주)네오플	
	L/1/1100	아케이드게임	오디션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	
기타 부문		모바일게임	미니 게임 천국3	(주)컴투스	
	우수개발자상		최재호	(주)게임빌	
	아마추어상		쓱쓱싹싹	Studio Type B	
			아이테 노스타		
	OVMIT		ZULH PC방		
	우수업소상		죠이를	플라자	
			공룡컴퓨	터게임장	
	사회공헌우수	기업상	(주)네오위즈게임즈		

부문	상명		수상작(자)	업체
본상	대상		그라나도에스파다	(주)IMC 게임즈
	최우수상		제라	(주)넥슨
		PC/Video	나인티 나인 나이츠	(주)판타그램
		온라인	서든어택	(주)게임하이
	우수상	아케이드	배틀 로봇 축구 게임	(주)아이알로봇
		모바일	아이모	(주)컴투스
		기능성	온라인피퍼	(주)조엔
		기획/시나리오	루니아 전기	(주)올엠
부문상	기술창작상	그래픽	그라나도에스파다	(주)IMC 게임즈
TEO		캐릭터	나인티 나인 나이츠	(주)판타그램
		사운드	썬 온라인	(주)웹젠
	esport진흥상	프로게임단	르카프 OZ게임단	(주)화승
		프로게이머	이윤열	팬택
	산업진흥부문 공로상		홍기화	코트라
	건전게임문화부문 공로상		이효자	국립특수교육원
	01-1-110111		서든어택(국내)	(주)게임하이
기타 부문	인기게임상		기어즈 오브 워(해외)	MS
	우수개발자상		이종환	(주)판타그램
	아마추어상		김종화(Rooms)	성균관대
			김중식	태경게임장
	우수업소상		신미숙	이티오락실
			송미화	화성탈출
	사회공헌우수7	입상	(주)엔시	시소프트

부문		상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열혈강호 온라인	㈜엠게임
본상	최우수상		볼카누스	제페토주식회사
		PC/Video	킹덤언더파이어 히어로즈	㈜블루사이드
		온라인	구룡쟁패	㈜인디21
	우수상	업소용	호무라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모바일	The OTL	㈜에이엔비소프트
		기능성	가우스엑스	EnP문화기획
		기획/시나리오	실크로드 온라인	㈜조이맥스
부문상	기술창작상	그래픽	길드 워	㈜엔씨소프트
TEO	기출장작정	캐릭터	요구르팅	(주)네오위즈
		사운드	볼카누스	제페토주식회사
	esport진흥상	프로게임단	G.O	
		프로게이머	박성준	프로게임단 POS
	산업진흥부문 공로상		정문경	지스타조직위원회
	건전게임문화부문 공로상		이정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171710111		열혈강호 온라인	㈜엠게임
기타 부문	인기게임상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블리자드코리아
	아마추어상		ReAL	Rack Our Brains
				싸이버 게임랜드
				명랑 오락실
	우수업소상		우수게임제공업소상	프리존 인터넷PC방
				미라클 PC방
				플레이어 PC방
	사회공헌우수기	업상	NH	N

4¤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대표자명
본상	대상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 세이더	㈜판타그램
	최우수상		마비노기	㈜넥슨
		PC	마그나카르타 진흥의 성흔	(주)소프트맥스
		온라인게임	RF온라인	씨씨알㈜
	우수상	모바일/PDA	트래픽	(주)컴투스
		업소용게임	로봇짱	(주)씨에프엔
		기능성게임	영어 공략왕	㈜이에스엘에듀
		기술창작상	마비노기	(주)넥슨
부문상	기술창작상	그래픽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 세이더	(주)판타그램
TEO		캐릭터	마그나카르타 진흥의 성흔	(주)소프트맥스
		사운드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 세이더	㈜판타그램
	인기게임상		카트라이더	(주)넥슨
			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	코나미마케팅아시아
	공로상		홍동희	막고야
			우옥환	한국청소년마을
	아마추어상		캐치캣	박병용
기타 부문	우수게이머상		최연성	SK텔레콤(T1)
기다 무군			월드컵 게임장	이갑철
		게임제공업소	헐리우드 게임장	김응겸
	우수 업소상		영재 게임랜드	정제우
	11 ==0	멀티미디어문화	당근 인터넷PC	조강묵
		콘텐츠설비	TNT 인터넷PC	허혜영
		제공업소	인터넷 훼미니칸	이종남

부문	상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리니지2	엔씨소프트
본상	최우수상		더보스:라코사노스트라	헥스플렉스엔터테이먼트
		PC	토막 완전판	씨드나인엔터테인먼트
		온라인	메이플스토리	위젯
	우수상	업소용	G-Zero	넷돌
		모바일	배틀 말뚝박기	엔텔리젼트
		기능성	야채부락리	플레너스
		기술창작상	테일즈 오브 윈디랜드	뭉클
부문상	기술창작상	그래픽	리니지2	엔씨소프트
구판성		캐릭터	야채부락리	플레너스
		사운드	쿵쿵따 시리즈	네오플
	인기게임상		메이플스토리	위젯
			워크래프트3 프론즌 쓰론	손오공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산업진흥부문 공로상		정광호	한국게임학회
	건전게임문화부문 공로상		자율지도위원회	민간지율합동위원회
	특별상 - 프로게이머		이윤열	KTF
기타 부문				인터넷PC게임존
				유니트PC방
	우수업소상		우수게임제공업소상	세이넷PC방
	771		TT/110/110 BT 0	신왕자게임랜드
				조이맥스
				동현컴퓨터랜드

부문	상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네이비 필드	에스디엔터넷(주)
본상		PC	코코룩	(주)나비야엔터테인먼트
		온라인	프리스톤테일	트라이글로우픽처스(주)
	우수상	업소용	라이브 액션 핑퐁	디게이트(주)
		모바일/PDA	대두신권	(주)엔텔리전트
		교육용	디미어즈	(주)재미창조
	게임기획시나리오상		나르실리온	(주)그리곤엔터테인먼트
	게임프로그래밍상		프리스톤테일	트라이글로우픽처스(주)
	게임그래픽상		네이비필드	에스디엔터넷(주)
부문상	게임캐릭터상		코코룩	(주)나비야엔터테인먼트
	게임사운드상		에이스사가	마이에트엔터테인먼트
	프로게이머상		박정석	-
	수출상		엔씨소프트(주)	-
	공로상		원광연	게임문화진흥협의회

부문	상 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창세기전 Ⅲ 파트2	소프트맥스
	우수상-PC	쥬라기 원시전 2	위자드소프트
	우수상-온라인	뮤	웹젠
본상	우수상-업소용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오리스
	우수상-모바일	라스트 워리어	게임빌
	아마추어상	선라이즈 3D	이상훈
	공로상	김영만	한국프로게임협회장
	시나리오	악튜러스	(주)손노리
	캐릭터	포트리스 2 블루	CCR
	방송	스타리그-온게임넷	-
특별상	프로그래밍	액시스	(주)재미시스템개발
720	그래픽	뮤	웹젠
	사운드	화이트데이	(주)손노리
	교육용	매직 빌더 & 뮤지컬 조이	(주)조이멘트
	아동용	하얀 마음 백구	(주)키드앤키드닷컴
	프로게이머	임요환	-
	인기게임상	라그나로크	(주)그라비티

부문	상명	수상작(자)	업체
	대상	포트리스 2	CCR
	우수상	킹덤 언더 파이어	판타그램
게임	우수상-업소용	컴온 베이비	엑스포테이트
	우수상-온라인	택티컬 커맨더스	넥슨
	우수상	마이 도미노 캐슬	조이멘트
	아마추어상	전설의 힘	박선우
기타	공로부문	소프트 맥스	-

4.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작품(2000~2011)

2011년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닌자 바운스	(주)젤리오아시스	김창훈	032-623-0213	기타
1분기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Bugs Wars	(주)핫독스튜디오	성영익	02-542-4956	슈팅 · 디펜스
	기능성 게임 부문	스마티앤츠	(주)대교	박태영	02-829-0501	교육용
	업소용 · 모바일 · 기타 부문	하늘섬 타이쿤	(주)위즈덤스튜디오	신현준	02-754-0056	타이쿤
2분기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항해는 즐거워	(주)빅포게임즈	강 승 구	02-857-0098	SNG
	기능성 게임 부문	매직청크와 마법의 성	(주)바른손크리에이티브	최종신	031-931-8850	교육용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3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밴드 마스터	(주)파이퍼게임스	이형수	02-3446-4773	온라인 · 기타
3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점프 파라다이스	(주)비주얼샤워	박홍관	02-312-7775	모바일 · 기타
4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플루티아	(주)에쎈모바일테크놀러지	우동화	02-596-5333	모바일 · RPG
42	기능성 게임 부문	쉐이크 쉐이크	매직빈	황윤수	052-239-3502	보드게임 · 교육용
5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세븐소울즈 온라인	(주)씨알스페이스	이태균	02-3404-8927	온라인 · RPG
J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던전 앤 파이터	넥슨모바일	이승한	02-560-6117	모바일 · FPS액선
6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비욘드 더 바운즈	(주)비주얼샤워	박홍관	02-312-7775	모바일 · 기타
U Z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베틀씽	(주)포디포디	조현호	02-2113-2277	아케이드 · 레이싱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미소스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	김기영	02-6202-7129	온라인 · RPG
/ 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그레이트 탱크 워	(주)젤리 오아시스	김창훈	032-623-0213	모바일 ·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아르고	(주)지포레스트	채지영	070-8655-9516	온라인 · RPG
9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스티커 슈팅스타	(주)블루페퍼	문성빈	02-867-6188	모바일 · 액션슈팅
	기능성 게임 부문	큐피드 보드게임	딘코	안종현	02-3665-3250	보드게임 · 교육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그림으로 말해요	(주)에이피게임즈	김재우	070-8231-1531	모바일 · 기타
	기능성 게임 부문	워드 콤보	(주)웅진씽크빅	최봉수	031-956-7151	보드게임 · 교육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4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아이언 마스터	(주)바른손크리에이티브	최종신	02-554-0855	콘솔(NDS) · 터치액션 경영시뮬레이션
4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하이브리드	(주)게임빌	송병준	02-2028-1011	모바일 · 액션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턴	(주)엠엔엠게임즈	이진교	02-508-8860	모바일 · 아케이드
5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디제이맥스 테크니카	(주)펜타비전	차승희	02-2052-5646	아케이드 · 기타
6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한자마루	(주)애듀플로	김성우 박광세	02-581-1978	온라인 · RPG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미니게임 히어로즈	(주)모비클	정희철	02-333-3278	모바일 · 기타
/ 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블레이드 마스터4 - 레전드	(주)엔소니	문성훈	02-557-5633	모바일 · RPG
8월	기능성 게임 부문	리치에셋	리치에셋	고 명	070-8650-2215	보드게임 · 교육
9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C9(Continent Of The Ninth)	NHN게임즈(주)	김병관	02-3498-6242	온라인 · RPG
32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허스키 익스프레스	(주)넥슨	서 민	02-2185-0574	온라인 · RPG
10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2010 프로야구	(주)게임빌	송병준	02-2028-1009	모바일 · 스포츠
102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마그나카르타2	(주)소프트맥스	정영원	02-598-2554	콘솔·RPG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발칸엠	(주)라센	조명식	031-776-0123	모바일 · 기타
112	보드게임 부문	디노 비즈니스	(주)플레이오프	김기찬	02-337-6561	보드게임 · 교육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장르
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르덴전기	(주)바이코어	박지수	02-422-4095	모바일 · RPG
2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아틀란티카	(주)엔도어즈	조성원	070-7017-6982	온라인 · RPG
2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체스 모바일	(주)모리소프트	오현석	031-341-7475	모바일 · 보드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풍림화산	(주)엠게임	권이형	02-6244-1129	온라인 · RPG
3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드래곤로드EX	(주)넥슨모바일	권준모	02-568-5581	모바일 · 액션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액션 삼국지	(주)게임빌	송병준	02-2028-1011	모바일 · 액션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찹스	(주)레드덕	오승택	02-6900-9913	온라인 · TPS
4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슈퍼 액션 히어로2	(주)컴투스	박지영	02-6292-6069	모바일 · 액션
	기능성 게임 부문	잉글리쉬 코스모스	(주)플레이오프	김기찬	02-337-6561	보드게임 · 교육용
5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스윙 골프 팡야 2nd 샷	(주)엔트리브소프트	김준영	02-2193-7078	비디오 · 스포츠
J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블레이드 마스터3	(주)엔소니	문성훈	02-557-5633	모바일 · 액선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프리스톤테일2	(주)예당온라인	김남철	02-3475-2915	온라인 · RPG
6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그래피티 히어로	엔플레이(주)	박기성	032-326-3466	모바일 · 액션
	기능성 게임 부문	워드 큐브	Creative Arts Amusement	이동렬	032-256-1588	보드게임·포석전략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극단적 다이어트	(주)세중게임즈	김태우	02-3420-1036	모바일 · 아케이드
8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오즈크로니클	(주)애니파크	김홍규	02-6292-7700	온라인 · 롤플레잉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지오인터렉티브(주)	김병기	02-3218-8213	모바일 · 스포츠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액션 퍼즐 패밀리2	(주)컴투스	박지영	02-6292-6069	모바일 · 퍼즐
9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알프스 농장 타이쿤	(주)모비클	정희철	02-333-3278	모바일 · 시뮬레이션
	기능성 게임 부문	메이플 스토리 배틀	(주)비저너리	이동훈	02-3472-6703	보드게임 · 교육용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고스트X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김양신	031-789-6624	온라인 · MMO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라켓 스타	(주)에이앤비소프트	최동완	02-2026-0087	모바일 · 스포츠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레이어	(주)픽토소프트	김세훈	02-558-4701	모바일 · 액션
112	기능성 게임 부문	판타지 수학대전	(주)와이티미디어	김상우	02-941-4339	보드게임 · 교육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카오스잼	(주)유니아나	윤대주	02-2654-8088	온라인 · RPG
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삼국쟁패2 열왕전기	(주)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 · 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오리엔탈 퀘스트	(주)이쓰리넷	성영숙	02-565-1800	모바일 · RPG
2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뽀롱뽀롱 뽀로로	네오넷	백승엽	02-3471-8431	모바일 · 아케이드
2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야수왕	(주)마나스톤	김인철	02-2192-3904	모바일 · 액션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온에어 온라인	(주)지엔피엔터테인먼트	이종원	02-542-9912	온라인 · 액션
3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잡아라 쥐돌이	(주)코뮤즈	김해정	031-909-2104	아케이드 · 기타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영어 뇌습격	(주)컴투스	박지영	02-6292-6069	모바일 · 퍼즐
4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만귀토벌전	(주)픽토소프트	김세훈	02-558-4701	모바일 · 액션
4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로보칸	(주)세븐데이타	하회진	031-777-3211	아케이드 · 슈팅
5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드래곤로드	(주)넥슨모바일	권준모	02-568-5581	모바일 · 액션
Ja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절묘한 타이밍	(주)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 · 어드벤처
6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TV게임천국	(주)오키오키	백준성	02-497-3478	모바일 · 아케이드
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골든 도져	(주)아이알로봇	박창현	032-326-3466	아케이드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0년(A.V.A)	(주)레드덕	오승택	02-6900-9913	온라인 · FPS
7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슬러거	(주)와이즈캣	남민우	02-3445-6802	온라인 · 스포츠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고무줄	지오인터렉티브(주)	김병기	02-3218-8219	모바일 · 아케이드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펌프 잇 업 제로 포터블	(주)스튜디오나인	최종신	02-554-0862	비디오 · 리듬액션
8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라피스라줄리	(주)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 · 어드벤처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미니게임 패밀리	(주)모리소프트	오현석	031-341-7475	모바일 · 아케이드
9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오르카	(주)지투지	송용의	02-537-1843	온라인 · MMORPG
V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위기일발 막장가족	지오인터랙티브(주)	김병기	02-3218-8217	모바일 · 미니게임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에어로너츠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김양신	031-789-6569	온라인 · 대전게임
1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돌려라 한글 퍼즐	피그캔	이상훈	02-6353-2033	모바일 · 퍼즐퀴즈
11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공박	(주)레드덕	오승택	02-6900-9913	온라인 · 스포츠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놈3	(주)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 · 액션

 $\dashv \square$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장르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네오스팀	(주)한빛소프트	김영만	02-3284-3136	온라인 · RPG
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이터널 사가	(주)엔소니	문성훈	02-557-5633	모바일 · 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마법 천자문 초급	(주)오픈타운	권오형	02-2203-6310	모바일 · 교육용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격투2006	㈜엔타즈	김현수	02-2026-4500	모바일 · 액션
2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모바일 킹덤 언더 파이어 - 네메시스	㈜지오스큐브	고평석	02-564-2994	모바일 · 롤플레잉
3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오투잼	㈜테크론시스템	조준호	02-326-4973	모바일 · 기타
υz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장금이의 꿈	에밀레정보통신㈜	구호성	02-887-5067	모바일·시뮬레이션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붐업	㈜나스카	오성민	02-515-5307	모바일·기타
4월	기능성게임 부문	노빈손 : 경제대륙에 가다	㈜게임크로스	이근정	02-3141-4574	기능성 · 보드게임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그라나도 에스파다	㈜아이엠씨게임즈	김학규	02-554-9140	온라인 · 롤플레잉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삼국지 영웅전 5 : 여포전	㈜넥슨모바일	권준모	02-928-9582	모바일·기타
5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물가에 돌 튕기기 - IQ	㈜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나인티 나인 나이츠	㈜판타그램	이상윤	02-546-9357	비디오 · 액션
6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러브 포티	(주)손노리	이원술	02-562-8615	온라인 · 기타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나가재! 붉은 응원단	(주)씨엘게임즈	이병철	053-632-1068	모바일·기타
7월			심사 이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컴온 베이비	(주)엑스포테이토	이상헌	02-553-9111	온라인 · 스포츠
8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미끌미끌쿵	(주)엠드림	최종호	02-2141-9336	모바일 · 기타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스케처	(주)지오인터렉티브	김병기	02-3218-8237	모바일 · 액션
9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쿠아 랜드	블루인터렉티브(주)	박준범	02-2201-1171	모바일 · RPG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피싱온	(주)베토인터렉티브	김지택	02-3444-7775	온라인 · 보드
	기능성게임	다트 보드게임	ebnb게임연구소	김서경	02-2648-7006	교육용·보드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스카2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02-3424-2363	온라인 · 슈팅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이모 : The World Of Music	(주)컴투스	박지영	02-6292-6069	모바일 · 액션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테일즈 판타지2	(주)피엔제이	곽진열	052-223-1547	모바일 · RPG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마그나카르타	(주)소프트맥스	정영희	02-598-2554	비디오 · 롤플레잉
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히어로즈	㈜이오리스	최종호	02-2141-9311	모바일 · 전략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우당탕탕 헤어샵	지오인터랙티브㈜	김병기	02-3218-8249	모바일 · 아케이드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스페셜포스	㈜드래곤플라이	박철우	02-548-7740	온라인 · FPS
2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정무문	㈜픽토소프트	김세훈	02-558-4701	모바일 · 액션
	기능성게임 부문	판타롱	㈜엔트올	김역식	02-928-1009	PC 온라인 · 시뮬레이션
3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프리스타일	㈜제이씨엔터테인먼트	김양신	02-2040-1111	온라인 · 기타
38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파라오의 보석	모비릭스	임중수	032-225-6305	모바일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디제이 맥스	㈜펜타비전	차승희	02-3446-5646	온라인 · 시뮬레이션
4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포춘골프 3D	㈜컴투스	박지영	02-6292-6054	모바일 · 기타
	기능성게임 부문	리니지 보드게임	㈜다고이	이광희	02-3672-0166	보드게임 · 롤플레잉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바우트	㈜엔로그소프트	김록윤	02-323-9676	온라인 · 캐주얼
5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신팔씨름	조이모바일	지상훈	02-557-6920	모바일 · 액션
	기능성게임 부문	키즈바둑	㈜나온소프트	강갑렬	02-2191-2510	교육용·기타
	기능성게임 부문	피퍼	조은산업	유효정	032-881-3037	보드게임 · 기타
6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동전축구	㈜쎈씨인모바일	임진하	02-3487-7096	모바일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데카론	게임하이(주)	권종인	02-525-6604	온라인 · 롤플레잉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정무문2	㈜픽토소프트	김세훈	02-558-4701	모바일 · 롤플레잉
/ 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삼국지 무한대전 2	㈜엔텔리젼트	권준모	02-928-9582	모바일 · 롤플레잉
8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로얄덤블	디지토닷컴㈜	김근태	02-555-7977	모바일 · 기타
OB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요구르팅	㈜네오위즈	나성균	02-6001-1836	온라인 · 롤플레잉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신 야구	㈜네오플	허 민	02-562-1511	온라인 · 기타
9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컴투스 삼국지	㈜컴투스	박지영	02-6292-6041	모바일 · 롤플레잉
JE	기능성게임 부문	가우스 엑스	EnP문화기획	신현식	033-747-6637	보드게임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워록	㈜드림익스큐션	장윤호	02-545-4912	온라인 · 액션
	기능성게임 부문	내 친구 포밍뿌	한솔교육㈜	변재용	02-715-0181	교육용·기타
10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불꽃놀이 XG	엑스크로스넷	이학수	02-333-3506	모바일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킹덤 언더 파이어 : 히어로즈	㈜블루사이드	김세정	02-3442-0832	비디오 · 전략시뮬레이션
	기능성게임 부문	놀이한자 보드게임	재미지요	김서경	02-2648-7006	교육용·기타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큐브제로	햄 <u>펙스(</u> 주)	최경섭	031-781-7447	모바일 · 기타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테일즈런너	㈜라온엔터테인먼트	박재숙	053-655-3274	온라인 · 기타

 $\dashv \square$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1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루넨시아	(주)막고야	홍동희	02-575-1485	롤플레잉
ΙΞ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떡볶이 타이쿤	(주)모비온	박사근	02-885-2807	경영 · 육성
2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케익하우스	엔텔리전트	권준모	02-928-9561	경영 퍼즐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오투잼	오투미디어	손승철	02-523-8957	음악게임
3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크레이지 버스	컴투스	박지영	02-6292-6000	아케이드 퓨전댄스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다크 슬레이어	아치소프트	양귀성	02-831-3004	모바일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팡야	엔트리브소프트	김준영	02-508-8549	캐쥬얼 골프게임
4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츄파추켓	씨에프엔	박창현	02-2668-6401	아케이드게임
	교육용게임 부문	페이블랜드 스토리	배틀겜	김남용	02-491-2003	아동용 PC게임
5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열혈농구	크리엔트	김동욱	02-3437-1665	스포츠 액션게임
J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엠조이넷	강신혁	02-3486-3910	모바일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프리프(Flyff)	(주)이온소프트	김광열	02- 563-6170	온라인 · MMORPG
6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생선가게 아가씨	(주)브이아이피 커뮤니케이션	조영웅	02- 556-9957	모바일 · 경영게임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엑스게임 위드 비	(주)와우포엠	신헌주	02-3448-5263	모바일 · 레이싱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이캔부기	(주)넷돌	노정태	02-2618-4893	업소용 · 리듬댄스
7 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메이팡 모바일	이니엄(주)	최요철	02-3446-7676	모바일 · 롤플레잉
8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 세이더스	판타그램	이상윤	02-546-9357	비디오 · 액션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이스크림 타이쿤	모아이테크놀러지	장준화	02-552-8624	모바일·경영시뮬레이션
9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	(주)넥슨	서원일	02-2185-0474	온라인 · 아케이드
9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모바일 크래프트	(주)젤리오아시스	김장훈	031-938-2780	모바일 · 전략시뮬레이션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대박 돈까스	(주)퍼니아이	김명옥	02-2681-2564	모바일 · 경영시뮬레이션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RF 온라인	CCR(주)	윤석호	02-6246-2050	온라인 · MMORPG
1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불멸의 이순신	아이넥스네트워크	박규병	02-6000-0280	모바일 ·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마비노기	(주)넥슨	서원일	02-538-1500	온라인 · MMORPG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에픽크로니클	(주)이치소프트	양귀성	02-831-3004	모바일 · 롤플레잉
	교육용게임 부문	영어 공략왕	(주)이에스엘에듀	안문환	02-3424-2991	온라인 · 주니어영어학습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테일즈 오브 윈디랜드	(주)뭉클	김종철	051-610-1240	PC 액션RPG
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미스터 크레인	(주)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	구준회	02-6325-1500	모바일 액션퍼즐
	교육용게임 부문	버블슈터 워드팡팡	(주)키드앤키드닷컴	김록윤	02-312-2182	온라인 교육용
2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실바니아 패밀리	(주)T3 ENTERTAINMENT	김기영	02-3424-3345	PC 횡스크롤 액션
2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은행나무 소녀 "밀"	(주)트리버즈소프트	이인선	02-796-6877	GP32 액션 아케이드
3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쿵쿵타 시리즈	(주)네오플	혀 민	02-562-1551	온라인 캐주얼
J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풀 트리거	(주)디지털실크로드	김동현	02-458-0707(210)	업소용 건슈팅
4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A3	(주)액 <u>토즈소프트</u> (주)애니파크	이종현 신오주	02-741-6155	온라인 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삼국지 영웅전 장비편	(주)엔텔리젼트	권준모	02-928-9582	모바일 액션 RPG
5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써니하우스	(주)나비야인터테인먼트	이상희	02-565-0254	PC 시뮬레이션
35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메탈컴벳	(주)마나스톤	김인철	02-2192-3900	모바일 3D 슈팅
	온라인 · PC · 비디오게임 부문	보아 인 더 월드	(주)지스퀘어	고세영	02-581-9695	PC 육성시뮬레이션
6월	온라인 · PC · 비디오게임 부문	카르마	(주)드래곤플라이	박철우	02-548-7728	온라인 FPS 액션
V2	업소용 · 모바일 · PDA게임 부문	브레인 서바이버	(주)이지네고	윤효영	02-3424-7772	업소용 모바일 4인 네트워크대전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아크쉐이더 블랙 메디 에이터	(주)안다미로	김용환	02-3140-2100	실시간 네트워크 FPS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교육용게임 부문	또찌또찌	(주)지스텍	허건행	064-745-0230	PC 온라인 교육용
8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아스트로엔	(주)아스트로네스트, 네오엑트 공동개발	김환기	02-755-5227	온라인 슈팅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헐크	(주)컴투스	박지영	02-6292-6000	모바일 액션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더 보스:라 코사노스트라	(주)헥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	정하균	02- 584-0694~5	PC 전략 시뮬레이션
9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메탈리온2(대표:김병기)	(주)지오인터랙티브	김병기	02-3218-8280	PDA 액션
	교육용게임 부문	레스큐	(주)이이씨정보통신 (주)룬스튜디오 공동제작	이현종 방유석	02-478-3378 02-2225-5577	PC 교육용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쿠키샵2	메가폴리엔터테인먼트	김소연	051-610- 0431	PC 경영 RPG
1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삼국이야기	게임엑스포	류지열	02-744-0470	테이블 Sim 보드게임
11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천상의 문	(주)지스텍	허건행	064-745-0230	온라인 MMORPG 3D 롤플레잉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G-ZERO	(주)넷돌	김영국	02-2618-4893	업소용 스포츠 3D 액션게임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1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둘리의 깐따삐아게임리그	(주)DDS	이정근	02-2140-4027	PC 액션 아케이드
1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ENG 슈퍼배구	(주)웹이엔지코리아	전 유	02-576-6505	모바일 스포츠
2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라그하임	(주)나코인터렉티브	한상은	02-544-8069	온라인 액션 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대두신권	(주)엔텔리전트	권준모	02-968-7655	모바일 액션
3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노바1492	(주)아라마루	강석한	02-557-4912	온라인
4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프리스톤 테일	트라이글로우픽처스(주)	김건일	02-525-6232	온라인 RPG
4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JOY 프로농구	(주)노리개소프트	오명석	02-712-3915	모바일 스포츠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샤이닝로어 온라인	(주)판타그램	이상윤	02-2112-2465	온라인 MMORPG
5월	FC : 본다한 : 미디포게임 구문	나르실리온	(주)그리곤엔터테인먼트	조병규	02-563-4066	PC 액션 RPG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황금의 대륙	엠드림(주)	최종호	02-543-0169	모바일 RPG
6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코코룩	(주)나비아인터테인먼트	이상희	02-565-0254	PC 시뮬레이션
7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M.G.G	(주)조이캐스트	김형균	02-6678-8202	PS1,2 액션 어드벤쳐
/ 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드림헌팅	(주)게임박스	김 범	031-903-6930	업소용 슈팅
8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타워 오브 바벨	(주)마나스톤	김인철	02-2192-3903	모바일 액션 RPG
9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네모고양이 아네모네	(주)멀티엔터프라이즈	지헌민	02-599-4333	PC 액션
J =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컴온 베이비 2	(주)엑스포테이토	이상헌	02-521-6266	아케이드 스포츠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위드	(주)조이임팩트	김태은	02-3424-7416	온라인 슈팅
1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큐티패티	위컴	김원혁	031-943-4826	업소용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네이비 필드	에스디엔터넷(주)	조상현	02-3482-9252	온라인 MMOTSG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한국 프로야구	주식회사 컴투스	박지영	02-6292-6000	모바일 스포츠
	교육용게임 부문	키즈 퀘스트	(주)룬스튜디오 윤선생영어교실	방유석 곽계영	02-2225-5573	PC 교육용

월	시상 부문	작품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1월	-	창세기전Ⅲ Part2	(주)소프트맥스	정영희	02-598-2554	PC
2월	-	악튜러스	(주)손노리	박병무	02-325-8871	PC
3월	-	스커드인 코리아	(주)지씨텍	이재성	042-864-4681	업소용
4월	-	액시스	(주)재미시스템개발	이태정	02-3411-3455	PC
	_	뮤지컬 조이	(주)르벡	백순엽	02-514-4638	PC교육용
5월	-	아트록스	(주)조이맥스	전찬웅	02-420-8854	PC(네트워크)
6월	-	엘도라도	(주)이오리스	전주영	02-543-8025	아케이드(일체형)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제로	(주)키프엔터테인먼트	김성춘	02-926-2101	온라인
7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버그버스터즈	· (수)이엠텍/미지	신동원	032-344-8332	업소용
				이성술	032 344 0332	
8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베틀마린	(주)드림미디어	유왕운	051-583-7020	온라인
0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오피스 여인천하	(주)단비시스템	김성식	02-3424-1810	업소용
9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쥬라기 원시전॥	(주)위자드소프트	심경주	02-418-7711	PC
92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포켓 프로야구	(주)포켓스페이스	김도식	02-579-8447	모바일 스포츠
10월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보보॥-수정의 비밀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	김기영	02-3424-3345	PC 액션 RPG
10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라스트 워리어	(주)게임빌	송병준	02-876-5252	모바일 RPG
	PC · 온라인 · 비디오게임 부문	매직 빌더	(주)조이멘트	김주현	02-3424-1766	PC 교육용
11월	업소용 · 모바일 · PDA · 기타 부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이오리스	전주영	02-543-8025	아케이드 일체형 경품게임

월	시상 부문	작품명	대표자	전화번호	플랫폼 · 장르
1월	창세기전 Ⅲ part 1	(주)소프트맥스	정영희	02-598-2554	PC
2월	Carom3D	(주)네오액트	최성연	02-862-2004	온라인
3월	지오골프	지오인터랙티브(주)	김병기	02-527-3201	휴대용
4월	임진록 2	드림웨어(주)	김태곤	02-392-0930	PC
5월	까꿍 외전 혼돈의 땅	(주)키드앤키드앤닷컴	김록윤	02-312-2180	PC
6월	삼국지 천명 2	동서산업개발(주)	오상현	02-3662-8020	PC
7월	Fortress2+	게임벤처(주)	윤기수	02-6246-2001	온라인
12	컴온 베이비!	(주)엑스포테이토	이상현	02-564-8811	업소용
8월	난타 2000	(주)아이솔루션	이기용	02-3453-7931	업소용
9월	택티컬 커맨더스	(주)넥슨	이민교	02-2185-1108	온라인
10월	강진축구	(주)아담소프트	박종만	02-2190-2400	온라인
11월	액추얼 파이트 2	(주)지씨텍	이재성	042-864-4681	업소용
112	XTANK ONLINE	(주)비쥬얼랜드	이승희	02-737-3867	온라인

5. 게임비평상 수상작

2010년

구분	비평 제목	수상자
문회체육관광부장관상	〈폴아웃3〉 비선형텍스트와 선형 텍스트의 조화, 그리고 미국적 아우라의 만남	신현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기업가 정신과 자기계발 담론의 개인화 - 스포츠 매니지먼트 게임의 경우	오근창
NHN(주)대표이사상	게임서사의 낯설게 하기, 그리고 새로움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내재된 '익숙함'의 변형에 대해	송세희
	〈The Drawn; the painted tower〉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녀와의 재회를 기다린다	윤혜지
가작	규칙 내에서의 즐거움과 규칙을 파괴하는 즐거움 - 〈포탈〉의 장르분석을 중심으로	허 권
	무한의 가능성을 말하다 〈리틀빅 플레닛〉이 선사하는 창조적 게임의 즐거움	이진우

2009년

구분	비평 제목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시간의 빈 칸으로 초대된 일상의 감각	송경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 경계에서 〈괴혼〉의 철학을 말하다	강윤정
NHN(주)대표이사상	《바이오 쇼크》의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 내러티브와 게임플레이의 화학적 결합	전창의
	(마그나카르타2)의 매체 변용과 스토리텔링의 분석심리학적 코드 읽기	이용승
가작	(C9), 액션과 RPG의 성공적 조화의 조건	최지윤
	(Left 4 Dead), 영화적 문법을 추구한 게임의 진화	이필립

구분	비평 제목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동물의 숲〉, 뿌리 내리기의 나선형 서사	안보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게임공간, 그리고 움직임의 은유 - 〈몬스터 헌터〉를 중심으로	이상우
NHN(주)대표이사상	〈컨템드 : 크리미널 오리진〉, 현대의 비디오게임이 이야기를 말하는 새로운 방법	이형균
	일상의 탈출을 꿈꾼 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곳((심즈) 분석)	심충학
가작	〈스포어〉, 게임과 진화에 대한 '차이와 반복'의 미학	권민석
	호모 비아토에서 호모 소키에스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분석)	윤현정

6. 프로 게임단

게임단	소속사	결성일	감독	활동 상황 및 소개	홈페이지
삼성전자 칸	삼성전자	2000년 6월	김가을	스타크래프트 - 주영달, 이정현, 차명환, 유준희, 장지수, 한지원, 송병구, 허영무, 임태규, 유병준, 김진, 조기석, 김준현, 김기현, 자동원 등 ※ 2008. 8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우승	www.samsungkhan.co.kr
화승 OZ	화승	2006년 3월	한상용	스타크래프트- 구성훈, 김태균, 박준오, 방태수, 백승혁, 손주흥, 손찬웅, 이제동, 하늘, 김유진, 박성준, 백동준, 김도욱, 김지훈, 이병렬, 이영웅 등 ※ 2008. 2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후기리그 우승 2008. 2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통합챔피언전 우승	www.hsoz.co.kr
웅진 Stars	웅진 홀딩스	2008년 9월	이재균	스타크래프트- 윤용태, 김승현, 신재욱, 백동건, 윤지용, 김명운, 김성운, 김민철, 홍진표, 박상우, 노준규, 이재호 등 ※ 2005. 2 SKY 프로리그 2004 그랜드파이널 우승	www.wjstars.com
위메이드 폭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2007년 9월	-	2011년 8월 31일 게임단 해체	-
하이트 스파키즈	하이트 맥주	2006년 6월	-	2010년 10월 CJ 엔투스에 합병	-
KT Rolster	KT	1999년 12월	이지훈	스타크래프트- 김대엽, 강현우, 박재영, 우정호, 박정석, 남승현, 황병영, 이영호, 고강민, 김성대, 최용주, 임정현 ※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09-10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스페셜포스- 임정민, 전병현, 정훈, 이정환, 김찬수 ※ 생각대로 T SF프로리그 2010 2 ^m 우승	sports.kt.com
MBC게임 HERO	MBC 게임	2006년 3월	성학승	스타크래프트- 염보성, 김재훈, 박수범, 김동현, 고석현, 서경종, 문세일, 오세기, 오정환, 정재우, 하재상, 곽기성, 김기훈 ※ 2006 SKY 프로리그 후기리그 2006 SKY 프로리그 통합챔피언전 2007 제2회 KeSPA컵 스타크래프트 부문	www.mbcgame.co.kr
			임수라	스페셜포스	
STX- SouL	STX	2000년 7월	김은동	스타크래프트- 김도우, 김동건, 김성현, 서지수, 이신형, 김구현, 김윤중, 변현제, 조성호, 김윤환, 김현우, 신대근, 조일장 등 ※ 경남-STX컵 마스터즈 2008 우승 경남-STX컵 마스터즈 2007 스페셜포스- 김인제, 김지훈, 박귀민, 윤재혁, 이창하, 최원석 ※ 스페셜포스 월드 챔피언십 - 우승 ※ 생각대로 T SF프로리그 2010-1st - 우승	www.bestsoul.com
SK Telecom T1	SK 텔레콤	마프우		* '장덕대로 F ' (* 프로디크 2010 - 18 - 구등) 스타크래프트 - 정명훈, 김택용, 박재혁, 최호선, 도재욱, 이승석, 정영재, 정윤종, 어윤수, 정경두 ** 2003 KTF EVER컵 프로리그 / 2004 LG IBM MBC게임 팀리그 2004 투싼배 MBC게임 팀리그 / 2005 SKY 프로리그 전기리고 2005 SKY 프로리그 후기리그 / 2005 SKY 프로리그 전트 파이널 2006 SKY 프로리그 전기리그 /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경남-STX컵 마스터즈 2009 / 경남-STX컵 마스터즈 2010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1/ 경남-STX컵 마스터즈 2011	www.sksports.net
			최병훈	스페셜포스- 이성훈, 김동호, 배주진, 조원우, 심영우, 조현종 ※ 생각대로 T SF프로리그 2009-2nd 우승	
CJ 엔투스	ᠺ 스포츠	2006년 4월	김동우	스타크래프트- 서지훈, 신상문, 조병세, 정우용, 유영진, 윤찬희, 신동원, 한지원, 유기성, 한두열, 송영진, 손재범, 진영화, 이경민, 장윤철, 채규승 ※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08-09 스페셜포스- 조경훈, 정준환, 유성철, 박성운, 도민수	www.cjentus.com
eSTRO	IEG	2006년 10월	_	2010년 10월 해체	-
공군 ACE	공군	2007년 4월	송동균	스타크래프트- 박영민, 김경모, 안기효, 손석희, 이성은, 김태훈, 변형태, 임진목, 고인규, 권수현, 이정현, ※ 2007년 4월 공군 ACE(Airforce Challenge E-sports)팀 창단	http://www.airforce.mil. kr/ace/main.do

7. 게임방송

형태	방송	주요내용				
지상파	SBS	- '게임쇼, 즐거운 세상' 프로그램 운영				
케이블	온게임넷	- 24시간 게임 전문 케이블 채널 - 게임대회 중계, 리뷰 및 프리뷰 등				
	MBC 게임	- 24시간 게임 전문 케이블 채널 - 게임대회 중계, 리뷰 및 프리뷰 등				
	ATV	- e스포츠 리그 중계, e스포츠 리그 제작				
인터넷 TV	판도라TV	- e스포츠 관련 개인 방송				
LUX IV	B tv	- e스포츠 리그 VOD 서비스				
	olleh TV	- e스포츠 리그 VOD 서비스				
	아프리카TV	- e스포츠 관련 개인 방송 - e스포츠 리그 중계 및 기획·운영				
위성방송	TUDICION	- e스포츠 리그 중계				
기타	e스포츠기자단	- 일간지, 스포츠 일간지, 무가지, 게임 전문지, 온라인 매체 등 23개 매체 참여				

8. 전국 PC방 현황

((사)인터넷PC문화협회 조사, 시·군·구 단위, 2010년 12월 기준)

		((A/)건디캣PC군와입외 소사, 시ㆍ군ㆍ구 단귀, 2010년 12월 기군 연도별 PC방 개설 현황						
시·토	시·군·구	2006	2007	2008 2009 2010				
ō	· - - - -	20,986	20,607	21,496	21,547	15,140		
E	강남구	288	310	21,476	260	162		
		265	291	253	247	160		
	강동구				237	246		
	강북구	183	188	192				
	강서구	257	254	247	284	186		
	관악구	322	391	204	304	196		
	광진구	263	260	242	230	420		
	구로구	172	215	203	211	244		
	금천구	140	200	176	161	91		
	노원구	207	204	196	183	132		
	도봉구	135	164	158	153	196		
	동대문구	234	239	478	205	142		
서울특별시	동작구	228	225	133	210	125		
	마포구	177	175	156	172	246		
	서대문구	182	185	149	168	85		
	서초구	192	189	150	172	101		
	성동구	152	151	157	332	204		
	성북구	178	176	208	183	109		
	송파구	231	228	283	179	172		
	양천구	193	190	190	209	114		
	영등포구	174	172	217	204	118		
	용산구	128	126	83	99	65		
	은평구	207	204	182	171	294		
	종로구	131	129	97	97	57		
	중구	85	85	96	107	135		
	중랑구	220	217	221	229	305		
소	<u>-</u> 계	4,944	5,168	4,917	5,007	4,305		
	강서구	8	7	6	10	6		
	금정구	154	152	117	120	75		
	기장군	22	21	24	32	19		
	남구	146	144	129	130	80		
	동구	47	46	31	41	22		
	동래구	124	122	112	119	74		
	부산진구	225	222	194	189	112		
부산광역시	북구	120	118	96	105	63		
	사상구	115	113	103	108	69		
	사하구	151	149	130	131	83		
	서구	40	39	44	47	29		
	수영구	77	76	74	89	50		
	연제구	82	81	78	84	48		
	영도구	63	62	57	54	30		
		44	43	40	33	19		
	중구	140	138	124	141	92		
	해운대구							
<u> </u>	ᆁ	1,558	1,533	1,359	1,433	871		
인천광역시	강화군	19	18	14	12	8		
	계양구	157	155	144	133	67		

	11 7 7	연도별 PC방 개설 현황 시·군·구						
시·도	시·군·구 	2006	2007	2008	2009	2010		
	남구	248	245	208	237	165		
	남동구	192	189	212	181	108		
	동구	35	34	24	24	13		
인천광역시	부평구	207	204	246	235	149		
	서구	127	125	150	131	93		
	연수구	91	89	128	125	78		
	옹진군	5	4	1	3	1		
	중구	42	41	41	40	30		
소	Л	1,123	1,104	1,168	1,121	712		
	대덕구	70	69	81	99	57		
	동구	96	94	103	117	78		
내전광역시	서구	189	186	200	197	125		
1120 11	유성구	92	90	95	106	77		
	중구	115	113	135	116	74		
	<u>зт</u> :Л	562	552	614	635	411		
	광산구	136	134	193	144	81		
		142	140	146	130	82		
광주광역시	남구 도그	116	114	133	100	53		
ラーマーハ	<u>동구</u> 북구	289	285	205	278	196		
		188	185	154	99			
			858		751	112 524		
<u> </u>	,	871		831				
	남구	83	82	69	86	48		
	달서구	216	213	182	198	125		
	달성군	43	42	23	34	19		
내구광역시	동구	117	115	108	128	74		
	북구	174	172	144	163	97		
	서구	99	97	88	129	67		
	수성구	119	117	119	118	74		
	중구	41	40	32	31	19		
소	계	892	878	765	887	523		
	남구	220	129	160	217	135		
	동구	98	66	62	83	53		
울산광역시	북구	79	30	40	45	28		
	울주군	89	40	62	65	42		
	중구	173	95	116	113	67		
소	·계	659	360	440	523	325		
	강릉시	151	149	146	142	170		
	고성군	21	20	15	33	7		
	동해시	51	50	59	33	30		
	삼척시	30	29	22	25	15		
	속초시	50	49	29	44	2		
	양구군	15	14	8	9	5		
7101-	양양군	11	10	9	12	9		
강원도	영월군	10	9	7	9	6		
	원주시	119	117	141	144	101		
	인제군	31	30	27	23	16		
	정선군	19	18	17	21	16		
	철원군	22	21	39	38	16		
	춘천시	120	118	124	118	72		
	태백시	27	26	24	25	12		

		연도별 PC방 개설 현황							
시·도	시·군·구	2006	2007	2008	2009	2010			
	평창군	13	12	18	19	14			
강원도	홍천군	21	20	22	17	15			
	화천군	38	37	29	28	17			
	횡성군	9	8	10	14	7			
2	소계	758	737	746	754	556			
소계 가평군		26	25	14	21	14			
	고양시	319	315	528	366	199			
	구리시	87	86	73	8	4			
	김포시	43	42	50	149	96			
	남양주시	122	120	95	72	70			
	동두천시	47	46	45	97	54			
	양주시	36	35	48	94	48			
	양평군	21	20	22	76	49			
	연천군	23	22	18	152	104			
	의정부시	193	190	150	40	27			
	파주시	102	100	93	467	270			
	포천시	65	64	64	329	208			
	과천시	6	5	6	433	238			
	광명시	136	134	123	261	253			
	광주시	44	43	70	388	217			
경기도	군포시	97	95	86	73	57			
	부천시	432	427	617	256	159			
	성남시	381	376	274	63	30			
	수원시	489	483	577	56	33			
	시흥시	184	181	190	37	22			
	안산시	404	399	772	24	11			
	안성시	56	55	57	79	83			
	안양시	296	292	252	206	129			
	여주군	27	26	32	40	24			
	오산시	66	65	64	234	157			
	용인시	160	158	211	41	55			
	의왕시	32	31	37	106	77			
	이천시	68	67	46	196	154			
	평택시	132	130	117	84	49			
	하남시	42	41	35	45	28			
	화성시	94	92	97	143	99			
	소계	4,230	4,165	4,863	4,636	3,018			
	괴산군	5	4	4	6	3			
	단양군	7	6	9	9	4			
	보은군	5	4	6	8	6			
	영동군	17	16	13	13	8			
	옥천군	13	12	13	12	8			
	음성군	25	24	37	39	26			
충청북도	제천시	59	58	44	55	33			
	증평군	6	5	12	12	8			
	진천군	24	23	15	25	19			
	청원군	27	26	30	38	20			
	청주시	315	311	371	336	228			
	충주시	114	112	92	101	53			
	소계	617	601	646	654	416			

시·도	и.э.э	연도별 PC방 개설 현황 구						
시 · 도	시·군·구	2006	2007	2008	2009	2010		
	계룡시	25	24	8	7	4		
	공주시	43	42	34	43	24		
	금산군	27	26	20	14	9		
	논산시	88	87	61	58	35		
	당진군	44	43	47	57	48		
	보령시	49	48	34	32	17		
	부여군	32	31	13	12	9		
충청남도	서산시	78	77	57	59	33		
	서천군	22	21	16	15	9		
	아산시	73	72	105	128	80		
	연기군	41	40	42	35	21		
	예산군	31	30	35	30	22		
	천안시	259	256	288	316	194		
	청양군	9	8	6	6	5		
	태안군	27	26	22	15	22		
	홍성군	49	48	26	28	17		
2	소계	897	879	814	855	549		
	경산시	109	107	104	67	100		
	경주시	89	88	102	119	78		
	고령군	6	5	4	3	1		
	구미시	174	172	241	288	178		
	군위군	4	3	5	4	2		
	김천시	30	29	38	37	20		
	문경시	26	25	21	22	14		
	봉화군	5	4	4	5	3		
	상주시	19	18	22	24	16		
	성주군	10	9	12	8	6		
경상북도	안동시	54	53	58	55	40		
	영덕군	9	8	9	10	7		
	영양군	4	3	4	3	4		
	영주시	46	45	50	38	25		
	영천시	40	39	21	22	8		
	예천군	7	6	8	7	5		
	울릉군	5	4	3	3	1		
	울진군	18	17	14	19	9		
	의성군	6	5	5	10	6		
	청도군	7	6	7	6	4		
	청송군	3	2	4	4	2		
	칠곡군	32	31	51	32	34		
	포항시	183	180	384	174	135		
2	소계	886	859	1,171	960	698		
	거제시	61	60	160	96	69		
	거창군	12	11	16	19	9		
	고성군	14	13	20	19	13		
	김해시	158	156	166	220	153		
경상남도	남해군	8	7	10	9	4		
	밀양시	24	23	34	30	24		
	사천시	39	38	37	39	26		
	산청군	6	5	5	4	2		
	양산시	75	74	83	89	57		

		연도별 PC방 개설 현황							
시·도	시·군·구	2006	2007	2008	2009	2010			
	의령군	17	16	5	6	3			
	진주시	188	185	165	157	95			
	창녕군	21	20	13	14	9			
	창원시	454	448	500	495	455			
경상남도	통영시	63	62	52	64	56			
	하동군	12	11	10	10	6			
	함안군	19	18	17	19	12			
	함양군	11	10	12	10	6			
	합천군	8	7	11	11	6			
 소		1,190	1,164	1,316	1,311	1,005			
	고창군	18	17	10	13	8			
	군산시	79	78	115	145	94			
		25	24	115	18	12			
	김제시								
	남원시	29	28	33	33	23			
	무주군	18	17	5	5	3			
	부안군	11	10	16	20	9			
전라북도	순창군	5	4	5	6	3			
	완주군	22	21	22	23	13			
	익산시	139	137	171	191	111			
	임실군	6	5	4	4	3			
	장수군	13	12	4	5	3			
	전주시	366	361	356	409	224			
	정읍시	49	48	35	35	27			
	진안군	5	4	4	4	2			
소	계	785	766	798	911	535			
	강진군	7	6	9	15	6			
	고흥군	11	10	4	9	11			
	곡성군	11	10	8	7	6			
	광양시	44	43	62	61	43			
	구례군	8	7	6	7	4			
	나주시	34	33	33	31	22			
	담양군	13	12	9	10	4			
	목포시	142	140	138	185	120			
	무안군	23	22	13	20	14			
	보성군	6	5	9	13	5			
	순천시	125	123	152	147	70			
전라남도	신안군	5	4	4	2	3			
	여수시	162	160	127	126	87			
	영광군	17	16	17	20	14			
	영암군	12	11	16	24	17			
	완도군	14	13	11	13	11			
	장성군	11	10	12	11	6			
	장흥군	10	9	9	8	4			
	진도군	8	7	10	9	12			
	함평군	9	8	9	8	4			
		19	18	24	20	13			
	해남군		10	16	22	15			
	화순군	702	677	698	768	491			
소									
-11-	제주시	255 57	251 55	287 63	270 71	160 41			
제주도	서귀포시								

9. 게임관련잡지, 웹진

〈국내 오프라인 잡지〉(게임 전문 주간신문 포함)

잡지명	발행주기	출판사	수록내용
게이머즈 (GAMER'Z)	월간	게임문화	게임 공략법 및 게임산업 기획기사 및 새로운 게임 소개 제공
게임저널 (Game Journal)	월간	예솜	아케이드게임 전문지로 아케이드게임 산업 현황 및 중고 아케이드 게임시장 시세 정보 제공
경향게임스	주간	(주)경향플러스	게임 관련 리뷰, 프리뷰, 게임 산업 기획기사 등 제공
The Games	주간	(주)전자게임스	게임 관련 리뷰, 프리뷰, 정보 제공, 게임 현장 소개
게임신문	주간	게임신문	뉴스, 신작 게임, 프로게임 방송, PC방 정보 제공

〈국외 오프라인 잡지〉

잡지명	발행주기	발행국	수록내용 및 특징
Computer Games Magazine	월간(폐간)	미국	PC게임 자료 제공, 공략 수록
Electronic Gaming Monthly	월간(폐간)	미국	비디오게임 전문 잡지로 비디오게임에 관한 최신 발매 정보, 게임 리뷰, 전략 등 제공
Game Developer	월간	미국	게임 정복의 무수한 전략 제공
Game Pro	월간	미국	게임에 대한 해법 제공
Journal of Game Development	계간(폐간)	미국	게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학술지
Mobile Media	격주간	미국	모바일게임 제공, 분석 컨텐츠, 모바일게임 뉴스 제공
Official XBOX Magazine	월간	미국	X박스 전문잡지
PC Gamer	월간	미국 영국	새로운 게임에 대한 소개 및 공략법 수록
Playstation: The Official Magazine	월간	미국	플레이스테이션 전문지
Simulation & gaming	계간	미국	컴퓨터 게임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설계 및 이론적인 논문 제공
Tips & Tricks	월간	미국	비디오 게임 잡지로 게임들에 대하여 숨겨진 코드, 비밀, 특별한 코스 등 제공
PLAY	월간(폐간)	미국	최고의 컴퓨터 게임 안내, 스토리라인 제공
Games for windows	월간(폐간)	미국	리뷰, 전략, 새로운 게임에 대한 프리뷰, 최신기술, 새로운 제품 소개
Edge	월간	영국	다양한 플랫폼을 다룬 게임 종합지
Game Informer magazine	월간	영국	PC게임 소개 및 게임 자료 제공
Games Master	월간	영국	다양한 플랫폼의 다룬 게임 종합지
Intergame	월간	영국	아케이드 게임기 소개 및 아케이드 게임기 제품 특성 소개 및 사업 현황 기사 제공
PC ZONE	월간(폐간)	영국	PC게임 소개 및 게임 공략법 안내
PSM3 magazine	월간	영국	플레이스테이션 전문잡지
GameStar	월간	독일	PC게임 소개 및 게임 공략법 안내
Arcadia(アルカデア)	월간	일본	아케이드와 비디오게임 전문 잡지로 관련 정보 및 뉴스 등 소개
Nintendo Dream	월간	일본	닌텐도 게임 전문 제공지, 게임 공략 및 게임 소개 제공
Digital Entertainment Business	격주간(휴간)	일본	게임 산업 소개
메가미(megami)	월간	일본	게임 전문 잡지, 최신호 목차 및 편집 일기, 단행본 안내 등
어뮤즈먼트산업(娛樂産業)	월간	일본	게임 산업 동향, 회사 소개
어뮤즈먼트저널 (アミューズメントジャーナル)	월간	일본	게임 산업 동향, 게임기 자료, 캐릭터 소개

〈국외 오프라인 잡지〉 (계속)

잡지명	발행주기	발행국	수록내용 및 특징
전격 G's magazine (電擊 G's magazine)	월간	일본	비디오게임 전문지
전격 PlaySation(電擊 Playstation)	격주간	일본	Playstation 게임 전문지
전격 NDS(電擊 NDS)	월간(휴간)	일본	NDS 게임 전문지
전격마왕(電擊マ王)	월간	일본	게임, 코믹스 전문지
Dengeki Hime	월간	일본	비디오게임 전문지
주간 패미통	주간	일본	게임 종합 전문지
패미통 PSP+PS3	월간(휴간)	일본	PlayStation 게임 전문 잡지
패미통 Xbox360	월간	일본	X박스 전문 잡지
패미통 DS+Wii	월간	일본	NDS, WII 전문 잡지
패미통 Wave DVD	월간(휴간)	일본	게임, DVD, 비디오 전문지
플레이 온라인(Play Online)	월간	일본	게임 전문 정보지, 게임 공략, 3D 슈팅, 네트워크게임 초보자 강좌, 하드웨어 정보 등 제공
로그인(Login)	월간(휴간)	일본	온라인게임 전문지, 온라인게임 소개 및 공략
콘프티크(コンプティーク)	월간	일본	게임 캐릭터 전문지
콘프에이스	월간	일본	게임, 만화 종합지
Cool-B	월간	일본	비디오게임 전문지
GAME JAPAN	월간	일본	보드게임 전문지
GAME SIDE	월간	일본	게임 종합 전문지
V 챔프(V ジャンプ)	월간	일본	게임,만화, 애니매이션 종합지
게마가(ゲーマガ)	월간	일본	게임 종합지
게라보(ゲームラボ)	월간	일본	게임 공략 전문지
Maina	월간	대만	다양한 플랫폼을 다룬 게임 종합지
자심전완(大彎電玩)	월간	대만	게임 소개 및 공략법 제공
가용전뇌유희	월간	중국	PC게임 전문지
대중연건	월간	중국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잡지
B's LOG	월간	일본	비디오게임 전문지
Tech Gian	월간	일본	비디오게임 전문지

〈게임 웹진 - 국내〉

웹진명	홈페이지	수록내용			
게임노트	www.gamenote.com	온라인게임 정보 사이트, 순위, 오픈베타, 게임 안내, 신작 정보 수록			
게임뉴스 아이템파크	news.itempark.kr	게임 전문 웹진, 케릭터 육성 정보, 기사 등 제공			
게임뉴스센터	ongam.com	게임 잡지, 콘솔, E스포츠, 모바일게임 소식 수록, 게임 뉴스, 영상 제공			
게임동아	www.gamedonga.co.kr	게임 종합 정보 사이트, 리뷰, 프리뷰, 게임 공략, 스크린샷, 다운로드 제공			
게임매일	www.gamemaeil.com	게임 전문 인터넷 웹진, 게임 뉴스, 리뷰, 블로그 뉴스, 커뮤니티 등 정보 수			
게임메카	www.gamemeca.com	게임 정보 포털, 게임뉴스, 인기 순위, 게임 데모, 패치, 동영상 다운로드, 공략집 제공.			
게임세상	www.gamess.co.kr	모바일, 콘솔, 온라인게임 웹진, 뉴스, 리뷰, 게임공략, 다운로드 제공			
게임스팟 코리아	www.gamespot.co.kr	온라인, PC, PS2, Xbox, 게임큐브 등 게임 뉴스, 순위, 프리뷰, 다운로드 제공			
게임신문	www.thegamenews.com	주간 게임 신문, 뉴스, 신작 게임, 프로게임 방송, PC방 창업 정보 제공			
게임어바웃	www.gameabout.com	온라인게임 평가 사이트, 인기 순위, 리뷰, 인터뷰, 베타게임 뉴스, 리니지 등 정보 제공			
게임저널	www.gamejournal.co.kr	아케이드, 게임장 뉴스, 신상품, 게임 소개, 오락실 관리 요령 및 법규 정보 제공			
게임조선	www.gamechosun.co.kr	온라인게임 뉴스 사이트, 아이온, 피파온라인2, 던전 앤 파이터 등 커뮤니티 수록			
게임차트	www.gamechart.co.kr	온라인게임 순위, 주간 리포트, 일간 게임 뉴스 정보 등 제공			
게임컬	www.gamecul.com	게임 뉴스, 리뷰, 프리뷰, 동영상, 갤러리 수록			
게임투데이	www.gametoday.co.kr	온라인게임 웹진, 보도기사, 칼럼, 게임 리뷰, 대회 일정 등 안내			
게임포스	www.gamefos.co.kr	PC게임 다운로드 사이트, 프린세스 메이커, 바이오 하자드 등 게임 소개, 다운로드 제공			
게임포커스	www.gamefocus.co.kr	온라인게임 웹진, 리뷰, 공략, 가이드, 기행기, 사설, 칼럼 수록			
게임플래닛	www.gameplanet.co.kr	PC, Xbox360, PS3, PSP, 닌텐도 DS, Wii 게임 커뮤니티, 스크린샷, 동영상, 자료실 제공			
겜툰	www.gamtoon.com	온라인게임 소개, 오픈베타, 카툰, 뉴스 등 정보 제공			
경향게임스	www.khgames.com	경향신문 제공 게임 전문 주간 신문, 게임 뉴스, 프리뷰, 리뷰, 데모 수록			
더게임스	www.thegames.co.kr	게임 주간지, 라이브 뉴스, 위클리 게임스, 게임존 수록			
데일리게임	www.dailygame.co.kr	온라인게임 전문 웹진, 뉴스, 리뷰, 스크린샷, 영상 등 제공			
데일리던파	dnf.dailygame.co.kr	온라인게임 전문 웹진, 던전 앤 파이터 리그 소식, 인터뷰, 동영상, 게임 정보 등 수록			
데일리e스포츠	www.dailyesports.com	온라인게임 웹진, 칼럼, 워 크래프트, 스페셜포스, 카트라이더 기사 등 제공			
디스이즈게임	www.thisisgame.com	온라인게임 정보, 리뷰, 칼럼, 뉴스 카툰 등 캐주얼 동영상 공략 제공			
루리웹	ruliweb.daum.net/	Xbox360, PS3, PSP, 닌텐도DS, Wii 등 비디오게임 공략 및 정보 제공			
마이게임티비	www.migame.tv	게임, UCC, 뉴스, 게임 공략, 마이티비, 동영상 제공			
머드포유	www.mud4u.net	온라인게임 웹진, 게임 소개, 뉴스, 저널, 업체 탐방, 리뷰 및 프리뷰 수록			
머드포유차이나	china,mud4u,com	중국 게임 뉴스, 중국 게임 리뷰 및 프리뷰, 온라인게임 순위 제공			
베타겜	betagam.net	장르별 게임 뉴스, 공략, 데모, 한글패치, 동영상 등 제공			
비디오게이머닷컴	www.videogamer.com	북미 게임 웹진, Xbox, Wii, PC 등 분야별 뉴스 및 비디오,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게임라인	www.vgl.co.kr	비디오게임(PS2, Xbox, 게임큐브, Xbox360,PS3), 휴대용게임 (GBA,NDS,ETC)등 공략, 리뷰, 뉴스제공			
싸이프랜	www.cyfren.com	온라인게임 웹진, 게임 뉴스, 추천 및 리뷰, 게임 팁, 동영상 등 정보 제공			
쎄이요	www.sayyo.com	펌프, 철권, 이나셜디 등 아케이드 게임 커뮤니티			
아이뉴스24게임	game.inews24.com	게임 소식, 비즈니스, 칼럼, 사진, 동영상 제공, 이벤트 안내			
온게임넷	www.ongamenet.com	게임 방송 중계, 게임 리그, 스타리그, 워3리그, 비디오게임 등 제공			
온라이프존	www.onlifezone.com	오픈베타 및 신작 온라인게임 소개, 게임 관련 정보, 추천게임, 자료실 등 제			
와이고수	www.ygosu.com	게임 뉴스, 자료, 커뮤니티, 프로게이머 정보 제공			
인벤	www.inven.co.kr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및 뉴스, 자료, 정보 제공			

〈게임 웹진 - 국내〉(계속)

웹진명	홈페이지	수록내용		
지피뉴스	www.igpnews.com	게임 전문 웹진, 온라인, 비디오게임, 포토갤러리, 아이템 정보, 이벤트 등 수록		
카오스큐브	www.chaoscube.co.kr	온라인게임 웹진, 오픈베타, 로또, PS2 정보 제공		
큐머드게임	www.qmud.com	머그게임 온라인 게임 정보, 오픈베타, 유료, 무료 게임 안내, 신작 소식 수록		
포모스	www.fomos.kr	e스포츠 포털 서비스, 게이머 인터뷰, 프로리그 경기 일정 및 기록, 뉴스 등 제공		
플레이포럼	www.playforum.net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리니지, WOW, 메이플 스토리, 블레이드 앤 소울 등 게임 정보 제공		
GG게임	www.ggemguide.com	게임 전문 잡지, 오픈베타 및 신작 온라인게임 소개		
MBC game	www.mbcplus.com/game	게임 전문 채널, 게임 중계 안내, 게임 리뷰, 프리뷰, 동영상 수록		
SBS 게임	game.sbs.co.kr	온라인게임 정보 사이트, 군주, 열혈강호, 대쉬바둑, 이지 파이터, 귀혼 등 게임 정보 제공		

〈게임 웹진 - 해외〉

웹진명	홈페이지	수록내용		
17173新网游頻道 (17173신온라인게임채널)	newgame.17173.com	중국 게임 웹진, 최신 게임 뉴스, 순위, 동영상 수록		
1UP	www.1up.com	미국 게임 웹진, 게임 리뷰, 경연대회, 화면 캡처 등 제공		
4gamer	www.4gamer.net	일본 게임 웹진, 리뷰, 게임 장르별 기사, 데모 게임, 동영상 수록		
超頻游戏网	www.gamech.com.cn	중국 게임 웹진, 한국 게임 소개, 뉴스, 순위, 스크린샷 수록		
巴哈姆特	www.gamer.com.tw	대만 게임 웹진, 비디오게임, PC게임 등 리뷰, 게임 소식, 순위 제공		
Aeria Games	www.aeriagames.com	게임 전문 웹진, 관련 보도기사, 포럼, 추천 게임, 동영상, 관련 정보 등 수록		
Atomic Gamer	www.atomicgamer.com	게임 전문 웹진, 뉴스, 리뷰, 게임 데모 및 동영상 수록		
CCC:Cheat Code Central	www.cheatcc.com	온라인게임 웹진, 게임 소개 및 리뷰, 스크린샷, 다운로드 등 제공		
Cubed3	www.cubed3.com	닌텐도, Will, DS, GC, GBA, RETRO 관련 게임 소개 및 포럼 수록		
CVG	www.computerand videogames.com/	미국 게임 일간지, 게임 뉴스, 리뷰, 프리뷰, 공략팁 제공		
dengeki.com	www.dengeki.com	일본 게임 잡지 dengeki, 플레이스테이션, PSP, Wii 게임 소식, 리뷰, 갤러리 수록		
Develop	www.develop-online.net	게임 산업 전문 웹진, 채용 정보, 관련 보도기사, 동영상 등 수록		
EDGE Magazine	www.next-gen.biz	게임 전문 매거진, 잡지 소개, 게임 뉴스, 비디오 게임, 닌텐도 및 채용 정보 제공		
Eurogamer.net	www.eurogamer.net	유럽 게임 잡지, 리뷰, 뉴스, 스크린샷, 아이폰, PPS 정보 제공		
Gamasutra	www.gamasutra.com	북미 게임 전문 웹진, 게임 뉴스, 구인구직, 교육 정보 제공		
Game Developer	www.gdmag.com	게임 개발 월간지, 북미 게임 산업 뉴스 제공		
Game Pro	www.gamepro.com	게임 전문 잡지, PS2, Xbox, Will, NDS 등 뉴스, 리뷰 수록		
Game Style	www.game-style.jp	PC게임 정보, 신작 가이드, 리뷰 제공		
Game Videos 1UP	gamevideos,1up,com	미국 게임 동영상 제공 사이트, PC, PS3, 닌텐도 등 동영상 수록		
GAME Watch	game.watch.impress.co.jp	임프레스 게임 뉴스, 신작 발매일, 게임 데모, 패치 다운로드 제공		
GameBase	www.gamebase.com.tw	대만 게임 사이트, PC, 비디오 등 게임 소식, 동영상, 온라인게임 제공		
Gamech	www.gamech.com.cn	중국 게임 웹진, 게임 뉴스, 순위, 커뮤니티 안내, 중문 서비스 제공		
Gamer.com	www.gamer.com.tw	대만 게임 정보 포털 바하무트		
Gamersrader	www.gamesradar.com	비디오, PC게임 치트코드, Walk Through 제공		
gamesindustry.biz	www.gamesindustry.biz	영국 게임 사이트, 비디오게임, PC게임 등 게임소식, 순위 제공		
GAMESLICE	www.gameslice.com	게임 잡지, PC, DS, Wii, Xbox,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뉴스, 동영상, 리뷰 안내		
GAMESPOT	www.gamespot.com	PC, PSP, Xbox, 모바일게임 리뷰, 프리뷰, 다운로드 제공		

〈게임 웹진 - 해외〉(계속)

웹진명	홈페이지	수록내용		
GameSpy	www.gamespy.com	미국 게임 웹진, 게임 뉴스, 리뷰, 프리뷰, 스크린샷, 칼럼, 게임기 정보 제공		
GAMEZONE	www.gamezone.com	PC, 플레이스테이션, Xbox, PSP, 모바일, 온라인, MMORPG 게임 정보 및 리뷰 안내		
GamingSteve.com	www.gamingsteve.com	미국 게임 웹진, 인터뷰, MMORPG, 리뷰 등 카테고리별 게임 정보 제공		
GIANT BOOM	www.giantbomb.com	비디오 게임 전문 웹진, 보도기사, 동영상, 게임 리뷰, 공략법, 이벤트 등 인		
GotFrag eSports	www.gotfrag.com	미국 e스포츠 전문 사이트, 게임 배틀, 뉴스 등 정보 수록		
IGN	www.ign.com	게임 리뷰, 차트, 가이드, 영화, 음악 정보 수록		
IncGamers	www.incgamers.com	미국 게임 웹진, 온라인, PC, 비디오 게임 정보, 리뷰, 커뮤니티 제공		
Just Push Start	www.justpushstart.com	게임 전문 웹진, 보도기사, 행사 일정, Wii, PSP, 온라인게임 리뷰 등 수록		
MCV	www.mcvuk.com	게임 정보 사이트, 비디오, 온라인게임 정보, 보도 자료 등 수록		
MESSIVELY	www.massively.com	게임 웹진, 게임 정보, 보도기사, 동영상, 스크린샷 등 제공		
mmohut	www.mmohut.com	미국 게임 웹진, 게임 소개 및 후기, 보도기사, 영상 등 수록.		
MMORPG.com	www.mmorpg.com	포럼 및 온라인게임 순위 제공		
MMOSITE	www.mmosite.com	미국 온라인게임 전문 웹진		
N4G	www.n4g.com	게임 웹진, DS, PSP, Xbox360, 모바일게임 등 리뷰, 스크린샷 제공		
OnlineGamer	www.onlinegamer.jp	일본 온라인 분류별 게임, 뉴스, 리뷰 제공		
OnRPG	www.onrpg.com	미국 게임 웹진, 게임 소개 및 소식, 리뷰, 스크린샷 수록		
OXM:Official Xbox Magazine	www.oxm.co.uk	엑스박스 전문 웹진, 게임 리뷰 및 프리뷰, 팁, 포럼 제공		
PC Games	www.pcgames.de	게임 전문 잡지,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 뉴스 기사, 인터뷰 등 제공		
Pig MIN	www.pig-min.com	인디게임 웹진, 아케이드, 시물레이션, 알카노이드 게임 정보 및 뉴스, 칼럼 제공		
PLAY magazine	www.play-mag.co.uk	플레이스테이션 매거진, 게임 리뷰, 캡쳐 이미지 등 수록, 구독 신청 안내		
QJ.net	www.qj.net	북미 게임 전문 웹진, Xbox360, PSP, Wii, 분야별 뉴스 제공		
RPG Fan	www.rpgfan.com	게임 전문 웹진, 포토 갤러리, 포럼, 보도기사, 리뷰 등 수록		
Sgame	www.sgame.jp	일본 온라인게임 웹진, 게임 기사, 리뷰 및 소개, 한국 온라인게임 기사 수록		
Shacknews.com	www.shacknews.com	온라인게임 뉴스, PS3, Wii 게임 리뷰, 동영상, 제작사 인터뷰 등 수록		
SI Kids	www.sikids.com	미국 스포츠게임 전문지, 레이싱, 야구, 하키 등 장르별 게임 소개		
Siliconera	www.siliconera.com	게임 웹진, DS, PS2, PSP 등 게임 소개, 리뷰, 스크린샷 등 제공		
Stractics	www.stratics.com	북미 게임 전문 잡지, 보도기사, 게임 리뷰, 동영상, 스크린샷 등 수록		
The Adrenaline Vault	www.avault.com	게임 리뷰, 프리뷰, 뉴스 정보 수록		
the Escapist	www.escapistmagazine.com	미국 게임 웹진, 온라인게임 정보, 리뷰, 관련 뉴스 제공		
VGI	www.videogamesindonesia.	인도네시아 게임 정보 웹진, Xbox, PS3, PSP, 신작 게임, 모바일, 영화 정보 제공		
Video Gaming247	www.vg247.com	미국 게임 웹진, 신작, 인기, 추천 게임 소개, 보도기사 제공		
Voodoo Extreme	ve3d.ign.com	미국 게임 웹진, 대회 정보 및 장르별 기사 수록		
WorthPlaying	www.worthplaying.com	게임 전문 웹진, 신작 소개, 게임 리뷰, 패치 다운로드, 포럼 등 제공		
ZAM	www.zam.com	온라인게임 전문 웹진, 보도기사, 리뷰, 동영상 등 수록		
インサイド(인사이드)	www.inside-games.jp	일본 게임 전문 웹진, 온라인, 비디오, PC게임 뉴스 및 리뷰, 주간 판매 순위 등 제공		
コンプチーク(콘平티크)	www.comptiq.com	일본 컴퓨터 게임 웹진, 잡지 소개 및 신간, 게임 발매일 등 안내		
ジーパラドットコム		일본 게임 웹진, 온라인, PC, 콘솔 게임 정보, 신작 리뷰, 관련 뉴스 제공		
(지파라닷컴)	www.gpara.com			

10. 주요기관 및 단체

구분	기관 및 단체명	설립연도	설립목적/기능	홈페이지	연락처
게임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	www.mcst.go.kr	02-3704-9360 ~69
지원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5	고품질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과 투지지원 및 산업육성	www.kocca.kr	02-3153-1114
	게임문화재단	2008.2	게임 이용 확인 서비스, 게임 과몰입 연구 상담센터 등 게임의 발전적 미래 지향	www.gameculture.or.kr	02-586-3558
	서울게임콘텐츠센터	2010.11	게임 개발사들에게 안정적인 게임개발 공간을 지원	www.sgcc.seoul.kr	02-3153-7085
심의/ 조정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1	게임물의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를 담당	www.grb.or.kr	02-2012-78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2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	www.kocsc.or.kr	02-3219-5114
	한국게임산업협회	2004.4	게임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 제고,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	www.gamek.or.kr	02-3477-2785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	1984.9	게임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여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	www.kgia.or.kr	02-536-4471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2001.6	PC방 권익보호, 건전한 인터넷 정보문화 창달	www.ipca.or.kr	02-962-5360
	한국e-Sports협회	1999.7	프로 게이머의 등록 및 제도적 보장, 게임대회를 통한 게임 프로모션 산업의 육성, 세계규모의 게임대회 지원	www.e-sports.or.kr	02-737-3710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2005.1	아케이드게임 관련 산업 육성 기여	www.gamekorea.or.kr	02-785-8512
	전국컴퓨터유기기구 유통협의회	1999.12	아케이드게임기 유통 발전 및 회원 권익 증진	game,fineweb,kr	02-2277-6766
	한국게임개발자협회	2000.1	게임 개발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교육 인프라 구축	www.kgda.or.kr	02-3153-2781
관련 조직/ 단체	한국마인 <u>드스포츠</u> 올림피아드	1999.5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육성과 대중화	www.msolympiad.org	02-2601-2345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2005.6	한국 보드게임 저변 확대 및 보드게임 업계 발전 기여	www.boardgame.or.kr	070-7425-047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998.1	조합원의 기술개발과 경영안정자금지원, 채무보증및 이행보증 실시	www.ksfc.or.kr	02-2141-780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988.4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	www.sw.or.kr	02-2188-690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993.7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불법복제 방지	www.spc.or.kr	02-567-2567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00.3	국내 인터넷 산업의 중흥을 위한 기업, 정부 및 단체간 협력 도모	www.kinternet.org	02-563-4114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KESA	1995.11	게임산업 관련 업계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지원,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www.game.or.kr	02-558-51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8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와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www.nipa.kr	02-2141-5000
	한국게임학회	2001.2	게임 제작의 이론 및 기술의 학문적인 연구·보급	www.kcgs.or.kr	02-3153-2775
관련 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1998.8	게임과 애니메이션 기술 연구 및 지원	www.kscg.or.kr	02-820-5412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2005.12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고, 문화콘텐츠 관련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서 산업 발전에 기여	www.ctkorea.or.kr	031-8005-4142
기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C기술지원센터	2001.12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를 구축, 기술 및 장비 지원	www.gtsc.etri.re.kr	02-303-0462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2001.6	기술정보 및 기술표준화 지원, 기술중개, 창업 지원	www.gtc.or.kr	031-290-5411
	게임분쟁연구소	2006.4	게임 관련 법정 분쟁에 대한 자문과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토대 미련.	www.gamedi.org	02-774-1650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20] [법률 제10629호, 2011. 5.19, 타법 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 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사행성게임물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시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 한 게임물
 -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시한 게임물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 한 게임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体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 련된 산업을 말한다.
-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 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 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의 경우
 -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 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 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

-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게임제공업: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 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 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본다.
-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 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 임물의 지도·단속
 -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 ①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 원 개발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 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 · 평가 및 활용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 ① 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지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 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 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 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 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 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1. 게임괴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 교육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 는 단체에 대한 지원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 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 선정성 · 폭 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시행
 -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2조의3(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 등)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 · 등급 ·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 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 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 제12조의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제13조 및 「초·중등 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 제12조의4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 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11.5.19〉
-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홍보
-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 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15조(이스포츠의 활성화)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 (이하 "이스포츠[전자스포츠]"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및 기록관리
 -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국제협력 및 교류
 -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전 자스포츠] 선수 권익향상
 - 5. 그 밖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등급분류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 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 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 한 사항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 청에 관한 사항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 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 1.19)
-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 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 임산업·이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 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선임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 ⑦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제17조(감사)

- ①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착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 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 청한 사항
 -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가 신청한 사항
-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 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 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7조의3(회의록)

-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8조(사무국)

- ① 등급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제19조(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① 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 ② 등급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20조(지원)

①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 하는 게임물
-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 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 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 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 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 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 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 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 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⑧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 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 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 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 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① 등급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1.4.5〉
-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 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 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 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 있다. 〈개정 2007.1.19〉
-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2007.1.19〉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 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 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 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 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 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 급분류 거부결정
-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 · 등록 · 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 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목개정 2007.1.19]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 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 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 중·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목개정 2007.1.19]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4

-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 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 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 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 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 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 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 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 장 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 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 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 키지 아니할 것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 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 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 간을 준수할 것
-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9조(영업의 승계)

-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 ②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 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 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 기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 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 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 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 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31조(사후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급위원회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 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 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 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 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 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 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 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 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 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 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 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 려가 있는 것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33조(표시의무)

-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 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광고 · 선전의 제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 ·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행위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 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 포 · 게시하는 행위
-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 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허가취소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1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때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 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 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1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변경등록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 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 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7.1.19]

제36조(과징금 부과)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2007.1.19〉
 -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 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 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 3. 모범영업소의 지원
 -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 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7,1.19〉
 -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물의 제거·삭제
 -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 외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 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 2. 시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 선전물
-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 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 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 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 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 나 협회등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 · 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 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⑩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포상금)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 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07.1.19]

제4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③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41조(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 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 인을 신청하는 자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 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제42조(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 장한 자
 -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기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삭제 〈2007.1.19〉
-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 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 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 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 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 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 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보관한 자

[시행일: 2012.1.22] 제45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 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 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 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4. 삭제 〈2007.1.19〉
-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단순위헌. 2010헌가4·5·34(병합). 2010.7.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 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 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다.[시행일: 2012.1.22] 제48조

부칙

〈제10629호, 2011, 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 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 터 〈22〉까지 생략